

# DCS

Daejeon Chungnam Sejong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입니다.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권역 내 대학·전문대학을 연계하고 지원하며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원격교육 생태계**를 구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DCS Together>에서는 원격수업 혁신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최신 교수법 동향, 수업노하우, 정책연구 결과,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권역 내 **공동활용 가능한 강의녹화 스튜디오**를 충남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활용이 가능한 원격강의 콘텐츠**를 개발 및 공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 대전환시대,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

국가 혁신성장과 산업발전의 핵심 근원은 바로 인재(人才)다. 교육은 곧 국가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는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고용, 소득, 소비 등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저작권 영역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저작권을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했다. 따라서 점점 더 저작권에 관한 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나라 대학가는 '비대면 강의'라는 온라인 캠퍼스 시대로 변화됐다. 기존 교육자료와 출결방식 또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등 디지털 기기를 주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디지털 교육환경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도 생겨났다. 2020년 교육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디지털 역량과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sup>1)</sup> 이와 같이 대학교에서는 태블릿 PC 등의 증가와 함께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생태계로의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추세는 예기치 않은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출판 창작물인 대학교재 등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는 사례들이다.

2023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한 달간 신학기 대학가에서 불법 출판복제물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온·오프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당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PDF 파일 불법 거래 게시물 342건을 확인하여 삭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1) 교육부, "대학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무상 지원", 2020. 11. 9., 교육부 보도자료

267개 대학 인근의 600여 개 복사 업체를 대상으로 46건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학교재를 무단제본 또는 PDF 파일로 복제하여 학생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들이다. 최근 들어 디지털 교육자료를 무단복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 스캔 확산행위 증가 상태에서 보듯이 대학교재 등 디지털에 익숙해진 대학가는 대학생들과 대학 구성원들이 저작권 침해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선제적인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저작권 교양교육,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인식 개선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표 1> 『저작권 통계』상 연도별 저작권 교육 통계

교육목적	교육대상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교양교육	성인	44,717명	47,163명	43,673명	62,561명	188,894명
전문교육	성인	13,074명	10,951명	22,948명	32,717명	56,559명
총계		57,791명	58,114명	66,621명	95,278명	245,453명

※ 『저작권 통계』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5. 17.)

## 교육 자료의 저작물 보호 필요성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sup>2)</sup>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의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만드는 교육자료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 자료를 만드는 대학교수들은 창작자이며,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sup>3)</sup>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sup>4)</sup>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전송하거나 홈페이지,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인 ‘전송권’을 위반한 것<sup>5)</sup>이다. 또한 교육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판매할 경우는 ‘복제권<sup>6)</sup>

2) 『저작권법』 제2조제1항

3) 『저작권법』 제1조

4) 배타적 권리란 창작자에게 저작권 등과 같은 독점 배타적 권리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문화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의미함

5)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제3판, 동방문화사, 2019. 8., 9면

6)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및 ‘배포권’<sup>7)</sup> 침해가 된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이 전적으로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법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은 교육 및 학술 등 일정한 경우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저작물의 저작권자권을 그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한다.<sup>8)</sup> 나아가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면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시험 또는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7)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법 제30조에 의하면 대학교재 자료 등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동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듯 저작권은 권리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대학교재 출판물과 PPT 형태 교육 자료 등의 저작자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수업을 스마트 기기를 통해 무단으로 녹음하고 영상을 녹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들 행위는 당연히 교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디지털 교육 자료의 저작권 침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출판 불법복제물 이용자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은 46.3%, 오프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경로를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온라인과 SNS상 불법복제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은 '복사·인쇄·제본 업소(인쇄물/제본책)(21.8%), '커뮤니티'(17.5%), '복사·인쇄·제본 업소(이메일/USB에 담긴 전자파일)'(17.1%), '웹하드·P2P'(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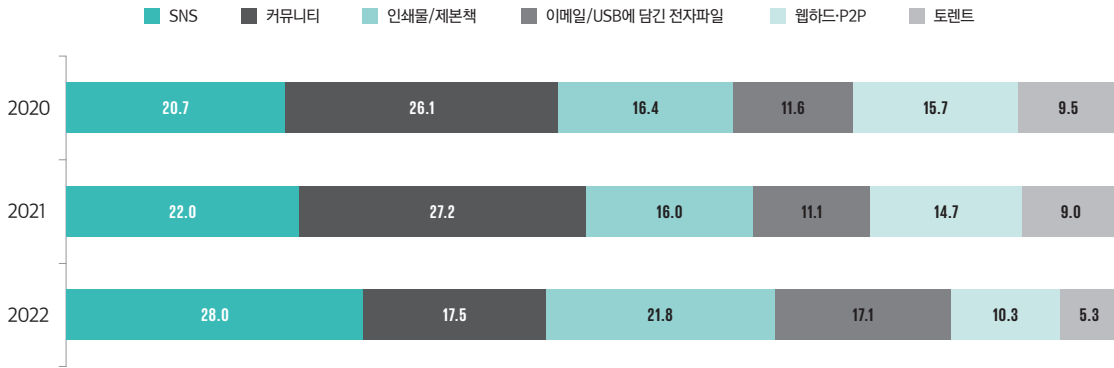
<표 2> 이용경로별 출판 불법복제물 이용 비중 비교

(단위: 개, %)

이용경로	2020년		2021년		2022년		
	이용량(개)	비중(%)	이용량(개)	비중(%)	이용량(개)	비중(%)	
온라인	웹하드·P2P	3,440	15.7	3,256	14.7	1,454	10.3
	커뮤니티	5,726	26.1	6,006	27.2	2,478	17.5
	토렌트	2,086	9.5	1,998	9.0	756	5.3
	SNS(비제휴)	4,552	20.7	4,860	22.0	3,968	28.0
오프라인	복사·인쇄·이메일/USB에 담긴 전자파일	2,542	11.6	2,442	11.1	2,424	17.1
	제본 업소 인쇄물/제본책	3,606	16.4	3,530	16.0	3,094	21.8
온라인 소계		15,804	72.0	16,120	73.0	8,656	61.1
오프라인 소계		6,148	28.0	5,972	27.0	5,518	38.9
전체 불법복제물		21,952	100.0	22,092	100.0	14,174	100.0

참조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3. 4.)

9)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연구보고서, 2023. 4.



[그림 1] 출판 불법복제를 이용 경험자의 주 이용경로(2023년)

참조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3. 4.)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정부 정책 등으로 대학가에 태블릿 PC 보급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대학생들은 수업준비와 수업 중에 전공서적이 아닌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sup>10)</sup>

2022년 9월 한 대학에서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교재 복제 이용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5%(167명)가 불법복제된 교재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4%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물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며, 7.8%는 교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본하여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대답했다.<sup>11)</sup>

최근 한 언론에서는 대학생 소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강의 녹음·녹화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복제물 유통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sup>12)</sup> 실제 대학생 소셜 커뮤니티에서 ‘녹화본’, ‘시험족보’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대학 수업 내용을 녹화한 파일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게시글들이 다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행태는 앞서 언급한 『저작권법』 제30조의 저작권 제한 사유의 조건인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교육 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가에서는 대학교재 등의 저작권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과 체계적 교육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10) 조아라·김세린, “노트북·스마트폰에 치이더니 ‘수요 폭발’…대학생 ‘필수품’ 됐다”, 2022. 12. 14., 한국경제, <https://v.daum.net/v/20221214220101779>, 최종 검색 2023. 5. 18.

11) 이우빈, “교재 불법복제,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 2022. 9. 25., 서강대학교 서강학보, <https://sgunews.sogang.ac.kr/front/cmsboardview.do?siteId=sgunews&bbsConfigFK=3608&pkid=885562>, 최종 검색 2023. 5. 16.

12) 이진호,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 녹화본 공유 거래 늘어”, 매거진 한경, 2021. 3. 24.,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103233987d>, 방문일: 2023. 6. 1.



## 대학의 저작권 교육 확대와 필요성

디지털화로 변화하는 대학가와 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교재 출판 생태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손쉽게 복제 가능한 디지털 자료로 인해 교재 출판산업이 고사되고 있다고 출판계는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출판 불법복제 행위가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대학생들과 주요 저자들인 교수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선 대학 내 '저작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 내 교과목으로나 입학 전 커리큘럼 등에 저작권 교육내용을 정식으로 넣는 방법이 있다. 즉 대학 당국이 저작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생과 교강사, 교직원을 중심으로 대학 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필자는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입학 초기 한국에서 배우지 못했던 표절과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들었던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들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과목을 통해 저작권 이해제고를 위한 정규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다.

차제에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저작권의 중요성과 활용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면 좋을 것이다. 초등학생도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저작권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초등학생은 저작권 침해자로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저작권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학생들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친화적 교재도 필요하다. 기존의 전자출판 교재들은 메모를 할 수 없는 등 사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대학생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출판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이유로 ①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27.9%), ② 휴대하기 편해서(13.4%), ③ 무료나 아주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져서(12.3%) 등의 결과가 조사됐다.<sup>13)</sup>

위 조사에서 보듯이 대학생들의 출판 불법복제물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교재 출판계도 휴대가 편하고, 저렴하고, 노트필기 등 사용이 자유로운 새로운 형식의 교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이를 무단 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도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관련 정부 기관·단체 및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박정렬** —————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서울대학교 철학과 및 美 듀크대학교 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정책관, 국민소통실장, 해외 문화홍보원 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실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저작권 보호, 대학교육, 해외 침해 대응 등이다.

13)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연구보고서, 2022. 82면.